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2가단205408 판결 [게임계정 매매대금 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빈치

담당변호사 정준모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수연

변 론 종 결 2022. 6. 21.

판 결 선 고 2022.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송달일까지는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2021. 10. 20. 피고의 ‘건쉽배틀’ 게임의 게임계정(이하 ‘이 사건 게임계정’이라 한다)을 매도한다는 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피고에게 연락하였고, 2021. 11. 10. 피고와 만나 이 사건 게임계정을 매매대금 1,2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로부터 계정에 접속이 가능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21. 12. 27. 위와 같은 양도 양수 내용이 기재된 ‘계정 양도양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원고 및 피고 성명 뒤에 모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위 계약서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게임계정에 접속할 수 있게 돕는다’, ‘원고가 이 사건 게임계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게임에 7일 이상 접속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배상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기재하였다(제7조).

다. 피고는 2021. 12. 27. 원고에게 원고가 보낸 위 계약서 중 제7조 중 ‘이 사건 게임계정에 접속할 수 있게 돕는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2021. 12. 29. 원고에게 수정된 ‘계정 양도양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카카오톡으로 그 사진을 보낸 후 이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피고 성명 뒤에 무인을 찍었고, 위 계약서에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한 절차 및 피해를 야기하면 계약은 무효화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정 양도금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기재하였다(제11조).

라. 원고는 2021. 12.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게임계정에 대한 매매대금 중 나머지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22. 1.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게임계정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게임계정에 대한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1,2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게임계정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면서 이 사건 게임계정의 가치를 2,000만 원 상당 상승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게임계정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나,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된다. 한편,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73049 판결 등 참고)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게임계정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게임계정의 매매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게임계정에 대한 매매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어 의사가 일치한 것인지가 불확실한 서로의 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벌 규정의 존부 및 그 액수 등이 이 사건 게임계정 매매계약 당시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할 본질적 사항이라거나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 (1) 원고와 피고는 2021. 11. 10.경 이 사건 게임계정을 매도한다는 점, 이 사건 게임계정의 매매대금을 1,200만 원으로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 (2) 원고는 2021. 11. 10.경 피고에게 600만 원을 바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600만원도 일정 기간 경과 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 (3) 원고는 2021. 12. 13.경 피고로부터 2021. 12. 15.까지 잔금을 지급하여달라는 연락을 받고서 종전에 피고로부터 그러한 말을 듣기는 했으나 원고의 실수로 날짜를 맞추기 어렵다면서 2021. 12. 27.경까지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11. 10.경 이미 잔금의 지급기일에 관하여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4) 원고는 2021. 11.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게임계정의 접속 가능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전송받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게임계정을 이용하였다.
 - (5)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21. 12. 27.과 2021. 12. 29. 사이에 이 사건 게임계정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게임계정을 매도한다는 점, 이 사건 게임계정의 매매대금 등에 관하여는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단지 위약벌의 존부와 액수에 관해서 이견을 보이면서 협의를 진행했다.
 - (6) 원고는 위와 같은 협의를 거친 후인 2021. 12. 30.경에는 피고에게 잔금 6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완료하기도 하였다.
-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게임계정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나아가 소장에서 ‘이 건 계약은 불체결’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민법상 계약해제의 효과로 반환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였으나¹⁾,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계약의 불성립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의 주장에 계약이 성립된 후 해제되었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선행하더라도 어떠한 해제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전혀 주장 및 증거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특별한 해제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나. 이 사건 게임계정 가치 상승분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게임계정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게임계정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게임계정을 양수한 후 이를 사용하면서 그 가치를 상승시켰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가치의 상승분 상당을 이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

1) 소장 중 ‘청구원인’ 제 5항